

#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

## (원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070
----------	-------

발의연월일 : 2019. 11. 29.  
발의자 : 원혜영 · 이석현 · 김부겸  
전혜숙 · 추미애 · 김정우  
송영길 · 김상희 · 김철민  
박정 · 김경협 · 강창일  
의원(12인)

### 제안이유

국제협력요원 파견제도는 종전의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27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병역 의무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 등을 돋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기간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마친 후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운영됨. 그러나 2016년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 파견 분야의 중복과 혼역병의 공급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 복무제도 축소 추이에 따라 제도가 폐지됨.

그런데 이러한 국제협력요원은 그간 국제협력업무 종사를 통해 국위선양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다 할 것임에도 현재 제도의 폐지로 인

해 법적 근거가 사라졌고, 현행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과도 달리 취급되고 있어 국제협력요원이 복무 중 순직하였거나 퇴직 후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훈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유족이 합당한 보훈 및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복무 중 직무로 사망하거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이 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고, 그 공로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합당한 보훈 및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제협력요원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 중 또는 퇴직 후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순직 심사 및 보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국제협력요원”은 종전의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27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아 국제협력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순직 국제협력요원”은 복무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 등으로서 외교부장관이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국제협력요원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라. 순직 국제협력요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유족은 외교부장관에게 순직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여부를 결정함(안 제5조).

마. 순직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음(안 제6조).

##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협력요원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 중 또는 퇴직 후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순직 심사 및 보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협력요원”이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3에 따라 개발도 상국가의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27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아 국제협력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2. “순직 국제협력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제4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조에 따른 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국제협력요원을 말한다.

가. 복무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나. 복무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국제

## 협력요원

다. 퇴직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원

3. “유족”이란 국제협력요원이거나 국제협력요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소집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소집해제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다. 부모(소집해제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孫子女, 소집해제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마. 조부모(소집해제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제3조(순직의 인정기준) ① 국제협력요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으로 본다.

1. 직무상 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한 부상

가. 직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직무상 질병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국제협력요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순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순직으로 본다.

③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 ①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외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및 병무청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

력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추천하는 각 기관의 장은 재해보상, 복지 또는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산하기관 소속직원을 포함한다)을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심사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2.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의 청구 및 결정) ① 순직 국제협력요원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유족은 외교부장관에게 순직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직 심사를 청구하는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순직 심사의 청구,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보상) ① 순직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 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사람의 등록 및 결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에 대한 순직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조사 등 심사에 수반되는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업무 처리 사항을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

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2. 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임직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의 효력을 가진다.